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254호
나. 발의자 : 성흠제 의원(찬성자 25명)
다. 발의일자 : 2025년 10월 20일
라.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연중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으나, 현행 조례는 문화·관광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대응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.
- 특히, 도심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 축제는 교통통제·차량우회·대중교통 조정 등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나, 부서 간 협의 및 시민 안내체계가 부족함.
- 또한, 축제 평가 항목에 교통관리 적정성 기준이 없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행정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.
- 이에, 교통관리 대책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·지원체계에 반영

하여,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축제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축제 개최 시 필요한 경우, 관계 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통제, 차량 우회, 대중교통 노선 조정 등 필요한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 (안 제16조제4항 신설)
- 나. 교통통제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에 한하여 축제의 평가 항목에 교통관리 대책의 적정성을 추가함. (안 제18조제3항 제10호 및 제4항 신설)
- 다. 서울특별시 축제지원센터의 기능에 ‘대중교통·주차·교통우회 및 통제 정보 안내 등 교통 관련 시민편의 제공’을 추가하고,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능을 적용하도록 함. (안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3항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혼잡, 안전관리 등 시민의 생활안전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통관리 대책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·지원체계에 반영하여, 안전이 보장되는 축제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.

나. 제안 배경 및 필요성

- 현행 조례는 서울시의 우수한 축제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, 관광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20년 제정되었음.
-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‘서울원터페스타’ 등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를 개발하고 국제적인 대규모 축제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, ‘민간 축제 지원사업’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민간 주도의 다양한 축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.
- 하지만, 도심 등 주요 공간을 활용한 축제가 증가하면서,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파 관리, 교통 통제, 시설 안전 등 안전관리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- 실제로,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처리 현황에 따르면, 서울세계불꽃축제 등의 인파가 몰리는

문화행사로 인해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.

< 2024~2025 서울시 문화행사 시 교통·안전관리 관련 민원 수 >

구 분	총계	건의	시정요구	하소연	기타
2025년 (1~9월)	13	9	2	2	0
2024년	24	15	1	7	1

- 따라서, 동 개정안이 제안한 교통관리 대책 수립 근거 신설과 교통 관리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계 마련은 서울시의 축제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서울시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
다. 축제 개최 시 교통안전관리 강화안(안 제16조 및 안 제18조, 안 제20조)

- 현재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16조를 근거로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시가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, 제18조를 근거로 지원받은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.
- 동 개정안은 안 제16조에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11제3항¹⁾에 따르면 대통령령²⁾에 따라 축제 개최자에게 하여금 안전관리대책을 수립

1) 제66조의11(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하도록 하고 있어, 현행대로 서울시가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축제는 개최자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동 개정안에 따라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 항목에 교통관리 대책의 적정성을 추가한다면, 개최자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, 동 개정안은 서울축제지원센터의 기능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 개최 시 시민 교통정보 안내 역할을 추가하여, 시민의 불편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음.
- 하지만 서울축제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서울시가 개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 및 컨설팅 등의 개최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, 대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기관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됨.

< 서울축제지원센터 사업내용 >

① 축제 평가·모니터링	축제의 운영성과 진단과 평가로 질적 성장 지원
② 축제 컨설팅·교육 운영	축제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축제 인력 역량 강화 교육 진행
③ 축제 네트워크 구성·운영	분야별 축제 전문가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
④ 축제 아카이빙·홍보 지원	서울시 주요 축제 정보 아카이빙과 축제 홍보 지원

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(약칭:재난안전법 시행령)」 제73조의9에 따른.

- 문화본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모든 축제에 대하여 시장에게 안전 관리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과 상충하나, 축제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축제 평가 항목에 교통대책의 적정성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힘.
- 또한 교통정보 제공은 경찰과 서울시 유관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어, 정보 제공 수단이 없는 축제지원센터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임.
- 따라서, 동 개정안은 축제개최자에게 적절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나, 축제지원센터에 교통정보 제공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, 유관부서와 업무가 중복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.

< 수정 의견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6조(축제의 지원 · 육성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6조(축제의 지원 · 육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, 시민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관계 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통제, 차</u>	제16조(축제의 지원 · 육성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	<u>량 우회, 대중교통노선 조정 등 필요한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
제18조(축제의 평가) ① · ② (생 략)	제18조(축제의 평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량적·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 할 수 있다. 1. ~ 9. (생 략)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0. 교통관리 대책의 적정성
<신 설>	④ 제3항제10호의 적용은 교통통제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에 한한다.
④ (생 략)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20조(축제지원센터의 설치) ① (생 략)	제20조(축제지원센터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	제20조(축제지원센터의 설치) ① (개정안과 같음)

	음)	같음)
② 축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 음)	1. ~ 5. (개정안과 같 음)
<u><신설></u>	<u>6. 대중교통·주차·교 통우회 및 통제 정 보 안내 등 교통 관련 시민편의 제 공</u>	<u><삭제></u>
6. (생략)	7. (현행 제6호와 같 음)	6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③ 제2항제6호의 기 능은 교통통제 또는 교통혼잡이 예상되 는 축제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</u>	<u><삭제></u>

의안번호
3254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
발 의	제 안 자	안건 소관 상임위	규제철폐 안건
	성 흠 제	문화체육관광위원회	해당없음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서울시 축제 개최 시 필요한 경우, 관계 부서·기관과 협의하여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○ 교통통제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 축제 평가항목에 교통관리대책의 적정성을 추가함○ 서울시 축제지원센터의 기능에 '대중교통·주차·교통우회 및 통제정보 안내 등 교통 관련 시민편의 제공'을 추가,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에 한해 해당 기능을 적용하도록 함		
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2025.10.20.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		
부 서 검 토 의 견	원안가결() / 수정가결 (○) / 부결() / 보류(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제개최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. 개정안은 시장에게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함○ 축제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축제 평가 항목에 교통대책의 적정성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○ 교통정보 제공은 경찰과 서울시 유관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, 교통정보 제공 수단이 없는 축제지원센터의 기능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		
대응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		
상 임 위 처 리 결 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		
담당부서	문화예술과	팀장	김나연(☎2133-2569)
		담당	정유진(☎2133-2570)